가정상담

12
2018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통권 424호

가정상담 표지12월 2018.12.7 3:48 PM 페이지3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SNS

트위터▷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lawhome

지난 11월 15일 본소는 2018년도 정기 후기 이사회를 열어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심의 · 의결하였다.
(관련기사 32면)

11월 28일 본소 강당에서 직원 및 자원봉사자 재교육을 겸한 2018년도 특강으로 이덕일 소장(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이 '알아 두어야 할 조선 정치사'를 강의하였다. (관련기사 32면)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3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4 • 이 달의 메시지
6 • 특집 | 양육비 심포지엄 ❷
16 • 특별기고 |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친권법의 개정 ❶
23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❿
24 • 최신 판례
26 • 가정폭력상담실
29 • 좋은 책
노포의 장사법
30 • 결혼과 인생(190) 영화 이야기
미쓰백 _ 김용언
31 • 실무수습 소감문
32 • 상담소 소식
35 • 지부 소식
36 • 상담통계
37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발행인 겸 편집인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 인쇄인 · 동아서적(주) 대표이사 이상업 | 발행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0723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 가길 14 · 전화 1644-7077 · 전송 02-780-0485 | 1987년 1월 28일 제3종 우편물 (나) 인가 / 2018. 12. 10(매월 10일 발행) / ISSN 1227-7568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4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가족정책의 일대전환을 촉구하며 ①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여행지에서 한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갓 성년이 된 것으로 보이는 남매와 그들의 부모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핵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엄마', '아빠', '딸', '아들'이라 새긴 티셔츠를 맞춰 입고 있었으며 여행 내내 즐겁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가정들이 저렇게 편안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 가정의 모습과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저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한국 가정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가정의 변화 속도는 이러한 저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수식하는 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급격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빨리'라는 말이 한국인의 어떤 속성처럼 여겨지는 이 시점에 '급격한 변화'라는 말조차 그 변화의 속도감을 담아내기에 부족하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어떤 이가 일찍이 '삼십년에 삼백년을 산 사람이 어찌 제정신일 수 있겠는가'하는 취지의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 뜻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서구사회가 신분제의 변화, 1차, 2차 산업혁명, 두 차례의 세계대전 등을 거치며 밟아온 단계를 우리는 한 세대 만에 지나온 것입니다. 정신과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5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사고와 관념은 조선시대 어디 쯤 혹은 일제 강점기, 좀 지나 한국 전쟁 쯤에 두고 몸은 20세기,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 말기에 태어난 이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고 식민지 피지배자, 전쟁의 당사자, 산업역군, 군부독재와 민주화 투쟁 시기 그리고 민주정부와 IMF 경제 위기 당시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이들이 모두 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복합적인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족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를 보면 조선시대 농경사회를 근간으로 설립된 대가족 제도, 가부장제에 근거하여 일제 강점기 식민통치를 원활하게하기 위해 강화된 호주제를 폐지하는 것이 2005년, 따라서 이 모든 것이 21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가능했으니 우리의 법과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는데 얼마나 뒤처져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동성동본 금혼의 철폐부터 가족법개정운동을 본격화하고 주도하면서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민주적이고 부부 중심인 핵가족제도가 보편적인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회 전반의 법과 제도, 관습과 채 어우러지기도 전에 이미 해체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이혼율,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다양한 가족 형태 등을 가정문제,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저는 입버릇처럼 외쳐 왔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과제로 던져져 있는 것은 물론 일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와 다문화 가정 역시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로 동시에 겹쳐 오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 처럼 우리 사회를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 '역동적' 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사회는 변화에 익숙하여 무엇이든 빨리 빨리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변화하는 세계에 빠르게 적응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기본적인 토대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변화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변화하는 가정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일인가구와 다문화가정의 급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데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이러한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지 저는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서 다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한 한 학생의 예입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학생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이고 자기 반에서 왕따를 당하며 매일을 고통 속에서 지내왔다고 합니다. 물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모두 다 이렇게 힘들지는 않겠으나 대부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많든 적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다문화 가정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여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 모두의 의식 전반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저 관념적으로 다문화 가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받아 들여야 한다는 피상적인 생각과 태도를 넘어 각 가정에서 그들을 내 아이와 같이, 내 아이의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즉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관습 그리고 시민 사회 전반의 의식이 이러한 사회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수용하려는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가정의 모습을 직시하여 그것이 올바른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일인가구와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연말과 새해에 걸쳐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어김없이 연말을 맞이하는 계절입니다. 춥고 스산한 계절이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슬기로움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상담소에 보내주셨던 많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모든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넘치기를 그리하여 그 평화가 우리 사회로 퍼져 가기를 기원합니다.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6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압류금지 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❷

압류금지 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은 물론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 모색해야

토론문

노 지 선
양육비이행관리원 추심지원부장

1. 들어가며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이후 2018. 9. 30. 현재까지 양육비는 약363억 원이 이행되었고, 양육비 이행률[1]은 2015년 21.2%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약 32%에 이릅니다. 또한 법제도 측면에서는 2018. 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사건의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소득 ·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 9. 28. 시행되는 등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약 70%의 양육비채권자들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급여채권을 통한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 및 개선에 대하여

앞서 발제자께서 발제하신 대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들 중 특히 급여채권은 양육비 이행을 직접 강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확실히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저는 본 심포지엄의 주제인 압류금지채권의 예외를 완화하여 추심할 수 있는 금액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발제자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150만원[2] 미만의 채무자 최저 생계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일률적으로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본소는 지난 10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진선미 의원실과 공동으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지난 11월호 〈가정상담〉에 주제발표와 토론문 일부를 게재 하였으며 이어 이번 호에 토론문을 모두 게재한다.

1) 양육비이행관리원, (2015년) 21.2% → (2016년) 29.6% → (2017년) 32.0% → (2018년 9월) 31.9%

2)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15. ~ 11.5)
– 생계비와 급여, 예금액의 압류금지 최저한도를 18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7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그러다보니 제3채무자인 여러 은행들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각 은행 별로 150만원 미만의 예금 잔액이 남아 있지만 통합 잔액은 1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추심할 수 없고, 이를 추심하려면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3]에 따라 추가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것은 미성년 자녀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4]에 따라 국가기관이 아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식 결정을 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 자녀 양육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헌법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임과 동시에, 자녀가 정상적인 사회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하는 부모의 헌법상 의무이고, 부모의 양육에 따라 자녀가 누리는 이익도 헌법의 보호를 받는 법익[5]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채무자의 생존권 보다 결국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먼저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경제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압류를 가능하게 하고 채무자가 이를 다투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법률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중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채권' 에 대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다소 우려를 표합니다. 양육비 외 다른 부양료 역시 생존권의 문제이고, 압류금지채권으로 임금채권과 부양료채권이 병렬적으로 규정된 취지를 들어 압류금지채권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기술하신 것으로 사료되지만, '부양료' 와 '양육비' 를 구별하는 법원[6]의 태도를 고려한다면 '양육비' 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그 해석에 대해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급여, 예금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에 대해서도 압류금지채권의 예외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나 예금이 없는 경우 주택임대차보증금 역시 최우선 변제 보증금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 (예를 들자면 2,000만원 초과 부분에 한하여)은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양육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는 대부분 사건들은 과거 양육비 채권의 추심과 장래 양육비 채권의 확보가 모두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과거 양육비' 는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장래 양육비' 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4) UN 아동권리협약 제3조 1.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그 활동이 공적 또는 사적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부 혹은 입법부 등 어떠한 기관에 의해 행해지든 '아동의 최선의 이익' 이 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18조 1. 당사국은 양부모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법정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5)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6헌마260 결정 위헌의견 참조

6)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결정),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결정)

7) 서울특별시 3,400만원,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등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8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지금의 현행 제도는 '과거 양육비'는 일반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인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장래 양육비'는 2009년에 도입한 '직접지급명령'으로 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전에 이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직접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채권 전부에 효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8].

간단히 설명하면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가 300만원인데,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가 2,000만원, 장래 양육비가 월 5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우선 장래 양육비에 대한 월 5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7. 5. 20.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은 이후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 2,000만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차의 번거로움보다도 양육비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문제입니다.

2017. 5. 20. 직접지급명령 이후 2017. 6. 5. 급여 및 퇴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전인 2017. 5. 25. 채무자가 퇴사하여 2017. 6. 2.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는 퇴직금 채권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퇴사가 아닌 제3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면 급여 채권의 금액을 안분하여 추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할 수 없는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양육비채권자와 미성년자 자녀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양육비 채무자가 소규모 회사에 다니고 이직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직접지급명령보다는 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더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9]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직접지급명령이 도입된 취지와 법 규정을 보면 다소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을 규정한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단서는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에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만으로 직접지급명령이 반드시 '장래 양육비'에 한정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반대 해석을 해보면 '장래 양육비' 뿐만 아니라 '과거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사소송법의 규정이 과거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도 신속한 이행을 받고자 하는 취지라면 이미 기한이 도래한 채권 즉, '과거 양육비' 채권도 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학계의 견해[10]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 양육비'만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논거[11] 역시 기존의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르면 된다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할 때, 자녀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취지, 신법(혹은 특별법) 우선 원칙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자는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신속하게 이행 받을 수 있고, 채무자 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역시 소송 1번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기존 절차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직접지급명령은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퇴직금'에 대해서는 실무상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 가사소송법 제 63조의2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제232조 참조
9)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23%, 급여 및 퇴직금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77% (2015. 3.~2017. 12. 기준)
10) 김연,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에 관한 소송법적 연구 107면
1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가사 [I] 295면, (2010)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9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분쟁의 1회적 해결 및 신속하고도 공백 없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 소결 – 양육비 채권의 특수성에 따른 추후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 방향

양육비는 소액의 정기금 채권이어서 시간적 공백 없이 이행이 되어야만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회사라도 다니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없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상 감치명령이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인데, 이행명령을 거치거나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을 거쳐야만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고, 이러다보니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이르러 장기화되는 소송기간 만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계속하여 미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1회 추심으로 종결되는 일반 민사채권보다 우선하여 보호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본 심포지엄의 주제인 급여채권 및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금지채권 규정 및 직접지급명령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더 나아가 미국의 급여공제제도, 해외 여러 나라에서 운영중인 제재조치 도입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미성년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바삐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토론문

민사집행에서 왜 양육비채권에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가

오 영 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법무사

1. 들어가며
2. 압류금지최저한도액 인상안 입법예고

2018.10.15.에 법무부에서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12], 제3조[13] 제7조[14]에 규정된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이유에서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최저 생계 수준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15]과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경제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약탈적 집행을 방지하고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수준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개정안은 별다른 이견이 있지 않으면 입법예고를 거쳐 2019.1.1.부터 시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급여에 대한 압류금지최저한도액 상향은 이 토론회의 주

12)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 · 부금 ·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3)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14)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5)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월급 1,745,150원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10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제인 압류금지채권 규정 개선의 필요성을 더 크게 해준다. 현재 급여 중 150만 이하의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데 그 액수가 180만으로 커진다면 양육비채권의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3. 민사집행의 예외 –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발제문에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에 대해 민사집행의 전제인 이행기 도래가 충족되지 않았어도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언급되었다. 이는 이미 양육비채권에 민사집행의 예외를 인정하는 하나의 예이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주된 개정이유는 절차의 간편화에 있었지만[16] 이행기가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를 규정한 것이며 이행기가 이르기 전에는 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민사집행에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어도 집행을 허용함으로써 양육비채권자의 입장을 우위에 둔 규정이다. 이는 양육비채권이 일반적인 채권과는 민사집행에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3. 양육비채권의 성립과 집행 – 압류금지 범위변경을 채무자 구제책으로 적극 활용

발제문에서 소개한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6헌마260 결정의 압류금지조항의 위헌의견에서 "양육비를 법원이 정할 경우 부모의 소득 등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므로, 다른 채권에 비하여 양육비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공무원연금 수급권에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수급권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는 적다."고 한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양육비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해관계에 대한 조절을 거쳐 정해지므로 당사자의 수입 및 생계(자녀의 생계도 포함하여)는 이미 중요하게 반영되었다. 그러므로 압류금지규정이 우려했던 취지인 채무자의 생계를 위태롭게 할 여지는 적다. 오히려 양육채권자와 자녀의 생계를 위한 양육비집행이 압류금지규정에 가로막혀 집행이 어렵게 됨으로써 채권자와 자녀의 생계가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압류금지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결과이며, 압류금지규정에 양육비채권의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게 한다. 현실에서 이러한 불합리가 있어 한부모, 미혼모 당사자들은 그동안 이 문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압류금지채권에 양육비채권의 예외를 인정하여 채무자의 급여에 압류금지최저한도액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당사자 협의나 법원의 판단 이후에 사정변경으로 채무자의 기본생계가 위태로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책은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3항[17]의 "생활형편 및 그밖의 사정"으로 인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활용하여 채무자의 기본생계가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은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빈번하게 사용되는 경우는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 제8호[18]의 경우이다.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이 금융기관

16) 직접지급명령 신설이유: 양육비의 확보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요건임에도 그 액수의 소규모에 비하여 현행법상의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실정인바, 이에 따라 보다 간편한 양육비의 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심판에서의 재산명시 절차 등과 양육비의 직접 지급명령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17)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3항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18)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 · 부금 ·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이 아니고 전체 예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에 대한 소명이 쉽지 않아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3항의 "그밖의 사정"을 소명하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신청하는 예가 많다.[19]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채무자의 적절한 구제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양육비채권에 민사집행의 압류금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한 이유는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취지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의 조화 및 채무자와 가족의 최소한도의 생활보장이라는 근거가 양육비채권 성립과정에서 이미 당사자간 협의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행절차에서는 양육비채권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양육비채권자와 자녀의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며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이 어려울 경우의 구제책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협의 및 재판	집행	압류금지범위 변경
일반채권	권리확정	채무자의 생계고려 – 압류 금지채권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및 그밖의 사정 고려
양육비 채권	권리확정 및 생계 고려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및 그밖의 사정 고려

4.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배인구 변호사의 발제문과 이은영 변호사의 발제문에서 각각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는데 취지는 동일하나,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청구채권	적용범위
배인구 변호사 개정안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 1호의 채권(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8호의 단서
이은영 변호사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확보를 위한 것임을 소명한 경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청구채권을 제246조 제1항 제1호의 채권으로 하였을 때는 민사집행법의 같은 조문상의 채권이므로 생계보장을 위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채권이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최근 양육비채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고 아동의 생계와 직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육비채권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간명하고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압류금지채권에 양육비채권의 예외를 인정하는 적용범위를 제246조 제4항 전체조문으로 할 것인지, 단서에 국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20] 단서로 국한했을 때는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채권의 취지를 존중하고 있어 반대의견과의 조화를 이루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견이라고 생각된다.

5. 양육비채권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제기

현행 법제하에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담보물권이 아닌 채권에 우선변제권 등의 특별한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금채권, 퇴직금채권 등이 있다.

19)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예: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의 기준이 금융기관별 150만원의 예금이 아니라, 채무자의 전체 예금 중 150만원의 예금으로 해석되므로 ①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예금지급을 할 수 없고, ② 채무자의 전체 예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느 계좌의 예금액이 압류에서 제외되는지도 불분명하다.

20) 각 의견에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 1항 제8호와 제 5호를 적용범위에 추가하였으나 이는 제 4호의 논점에서 부수하는 성격이 강하여 편의상 제4호 전체조문과 단서에 국한하여 적용범위를 논하는 것으로 하였다.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12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이는 서민의 생활유지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주거안정 내지 사업안정, 최소급여의 확보를 통해 서민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의한 것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생계를 보장할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사회 안정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일이기에 물권이 아닌 이들 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일정범위 내에서는 물권에 앞서는 보호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양육비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자녀의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해 지출되는 최소한의 생계비에 해당되며, 양육에 필요한 시간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당사자의 근로능력에 일정한 제한을 주어,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할 만한 충분한 소득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육비의 확보에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자녀의 생계에 직결되는 양육비채권을 일반 사적 채권채무관계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여타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과의 형평성에 비추어도 양육비채권에 임금채권에 준하는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21]

자녀의 양육은 각 부모의 법적의무이지만 동시에 미래사회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 의무이기도 하다. 이들 자녀들은 현재 우리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요, 미래사회에서 사회의 주축이될 세대이므로 국가와 사회의 미래는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토론문

상담과 소송구조를 통해 본 양육비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문제점과 제언

최 수 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1. 서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관심을 가지고 양육비 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구조와 법개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특히 2001년 4월 양육비에 관한 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심포지엄도 개최하였다.[22] 이러한 조사 연구를 기초로 양육비 채권 이행 확보에 관한 법률안과 양육비 선급 법률안[23]도 발의한 바 있었고, 이후에도 양육비 이행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 활동을 활발히 벌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육비 이행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상담과 지난한 재판과정을 거쳐 양육비채무자의 봉급을 압류하고자 하였으나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좌절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자녀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임에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양육비 상담과 소송구조를 지원하는 현장에서 이러한 한계에 부딪칠 때마다 양육비채권은 어떤 채권이나 권리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21) 20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미혼모포럼 오영나 "양육비 집행절차와 이행확보방안"

22) "양육비 제대로 받고 있는가(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 실태 및 의식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2001년 5월 31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개최; 상담소에서 실시한 ′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 실태 및 의식조사 ′ 를 기반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으로 이를 통해 상담소는 우리사회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하였다. 해당 조사는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 현실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조사라는 점에서 주요한 의의가 있다.

23) 김재경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172547, 2005. 9. 1., 임기만료폐기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13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직접지급명령의 실제 활용도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의 본안 및 집행사건의 비율[24]

상담소의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을 살펴보면, 2015년 양육비청구 등 본안사건의 비중이 68.7%에서 2018년 24.7%로 줄었다. 반면, 양육비이행 및 집행 사건의 비율은 2015년 31.3%에서 2018년 75.3%로 증가하여, 이행 및 집행이 양육비 소송구조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소를 통해 양육비청구를 한 내담자의 집행권원 확보가 일정 수준 이루어졌고, 또한 2009년 5월 도입된 양육비부담조서제도로 인하여 별도로 양육비청구를 하지 않고 곧장 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집행권원을 받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비양육자(양육비채무자)와 반복적인 집행 절차를 소모적으로 거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양육비소송의 핵심은 집행절차의 성공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집행사건 내 간접강제와 직접강제집행의 비율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집행사건은 여전히 간접강제 수단(이행명령신청, 과태료, 감치 신청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 확보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직접강제(부동산압류, 동산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직접지급명령신청 등)의 소송구조 비율은 2015년 19건(전체 중 12.6%, 집행 중 40.4%)에서 2018년 21건(전체 중 24.7%, 집행 중 32.8%)으로 전체 양육비사건의 10-20%, 집행사건의 30-40%선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것은 복잡한 절차를 통해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비양육자(양육비채무자)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비양육자(양육비채무자)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급여가 압류금지채권 범위 안에 해당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행명령 등 간접강제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내담자들을 상담해 보면, 좋지 않은 감정으로 헤어진 비양육자(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연락하고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한다. 혹시 몇 달 기다려보면 양육비를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다려보고, 혼자 고민하다, 비양육자(양육비채무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발뺌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면, 법률상담, 나홀로 소송을 해보면서 지칠 대로 지치게 된다. 그러다 양육비 소송구조로 월급 압류라는 실효성 있는 법 조치를 찾았다고 기대를 하였으나, 비양육자(양육비채무자)의 월급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어 또 다시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3. 압류금지채권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송구조, 상담 사례

상대방이 급여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 의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를 살펴보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적용이 실무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24)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추이(2015-2018)

연도	전체	본안	집행		
			총계	간접강제	직접강제
2015년	151건	104건	47건(전체 중 31.3%)	28건	19건
2016년	99건	40건	59건(전체 중 59.6%)	33건	26건
2017년	110건	59건	51건(전체 중 46.4%)	37건	14건
2018년 (현재)	85건	21건	64건(전체 중 75.3%)	43건	21건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14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1)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

- 내담자 : 여성, 40대, 서울, 서비스업, 월수입 130만 원
- 상대방 : 남성, 50대, 포항, 회사원, 월수입 400만 원 이상
- 자녀 : 13세, 15세

내담자와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혼 당시 양육비 액수는 정하지 않았다. 내담자는 이혼 후 방문판매, 마트직원 등 여러 일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해왔다.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내담자는 양육비 청구를 통해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도록 되었으나, 상대방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내담자는 상대방이 00회사에 다니며 적지 않은 소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했다.

그러자 상대방은 황급히 퇴사하였고 현재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로 직장을 옮긴 상태이다. 내담자는 다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직접지급명령의 경우 150만 원 이하 급여를 받는 경우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친척에게 본인 소득을 150만 원 이하로 조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본인 명의가 아닌 어머니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담자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일부의 양육비 밖에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

- 내담자 : 여성, 40대, 서울, 어린이집 교사, 월수입 140만원
- 상대방: 남성, 40대, 서울, 회사원, 월수입 280만원
- 자녀 : 15세, 13세, 10세, 6세

이혼 당시 상대방은 자녀들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혼 후 상대방은 연락도 되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내담자는 2-3개의 직업을 갖고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상대방이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하여 월 280만원 가량의 소득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담자는 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 위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지만, 양육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부분에 해당되는 130만원에 불과하여, 양육비 전액을 받지는 못하였다.

3) 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자 회사를 그만 둔 사례

- 내담자 : 남성, 20대, 서울, 무직
- 상대방 : 여성, 20대, 서울, 미상
- 자녀 : 8세

내담자와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며 자녀의 양육비로 상대방이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간헐적으로 보내온 양육비 7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자녀의 선천적 지병으로 인해 병원비 및 교통비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를 입학하여 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내담자는 미지급된 과거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과 함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당시 상대방은 주식회사 ▲▲에 사내이사로 취임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직접지급명령이 결정되자마자 이를 사임하였고, 내담자는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4) 상대방이 다니던 회사를 압박하여 양육비를 받은 사례

- 내담자 : 여성, 40대, 서울, 자영업, 월수입 100만 원
- 상대방 : 남성, 40대, 수원, 회사원, 월수입 130만 원
- 자녀 : 14세, 16세

이혼 당시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40만원을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조정이 성립하였다. 상대방은 조정조서에 따라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늦게 지급하거나 의무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에 내담자는 상대방의 직장을 확인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인 **학원은 상대방이 퇴직할 때 지급을 하겠다고 지급을 거부하고, 상대방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양육비를 공제한 급여만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를 압박하여 압류된 급여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압류금지채권의 규정에 대한 오해로 지급자체를 꺼리는 회사로 인하여 내담자가 양육비를 지급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15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4. 양육비채권의 특수성

1)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취지와 미성년자의 복리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취지는 채무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이러한 채무자의 기본적 생활비에는 이혼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미성년자녀의 생활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혼을 하여 자녀를 키우는 채무자가 양육비집행을 받은 경우, 현행법 규정에 의하면 압류금지채권으로 인하여 재혼자녀의 기본생활은 보호되는 반면, 이혼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미성년자녀의 기본생활을 보호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동거하는 미성년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미성년자녀의 생활비를 다르게 규율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압류금지채권 규정이 이혼가정의 미성년자녀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 개인파산제도에서의 양육비채무

주제발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생계보장과 갱생이 가장 강조되는 제도인 개인파산제도에서조차도 양육비채무는 조세, 벌금, 임금 등과 함께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곧, 양육비채무는 그 성격상 일반채권이 아닌 조세에 준하는 의무라는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 ·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5. 개정안에 관한 의견

양육비채권은 압류금지채권의 예외여야 한다.

① 양육비채권을 압류금지채권의 예외로 하는 법 개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양육자(양육비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압류금지채권 규정을 양육비채무를 빠져나갈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오히려 비양육자(양육비채무자)에게 합법적으로 양육비 책임을 면제해 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부작용마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공표 이후 5년 사이 이미 당사자들 사이에서 유의미한 기준이 되었고, 양육비 액수의 현실화와 자발적인 양육비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은 양육비 지급기준으로 자리매감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양육비채권을 압류금지채권의 예외로 하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②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의 문제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채무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양육비 채권자, 보다 본질적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양육비채권자의 사정을 헤아려 압류금지의 예외를 인정할 듯이 보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일반 채권자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양육비채권자에게 신청과 입증의 부담을 주는 조항이다. 양육비채권을 압류금지채권의 예외로 하는 법 개정을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입증책임을 비양육자(양육비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채권자의 채권 만족과 비양육자(양육비채무자)의 긴급한 사정과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16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특별기고**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친권법의 개정 (1)

김 상 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는 말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와 피해아동보호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라고 할 수 있다.[1] 그 이전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의식조차 희박했고,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친권의 행사라는 명분에 가려 거의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아동학대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학대로 희생된 아동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아동학대와 피해아동보호는 우리사회에서 하나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다.[2] 이러한 사회 현실에서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무엇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 논의과정에서 법학분야도 제외될 수 없었다. 특히 아동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이 부모(친권자)라는 사실과 친권의 남용에 의해서 아동의 복리가 명백하게 침해되는 상황에서도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두 가지 결실로 이어졌는데, 하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2341호. 2014. 1. 28. 제정. 2014. 9. 29. 시행.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한다)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법상 친권상실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의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법률 제12777호. 2014. 10. 15. 개정. 2015. 10. 16. 시행).

이 논문에서는 우선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제정된 경위와 그 의미,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3] 보

** 지난 8월 27일 개최되었던 본소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에서 김상용 교수 본인이 발표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기고하였다. 주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원고 그대로를 2회에 걸쳐 나누어 게재한다.

1) 2000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처음으로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아동학대예방센터는 2006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되었다.

2) 2012년에 아동학대방지와 관련된 법률안이 3건 발의된 것은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 ·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17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다. 이어서 친권 상실 등에 관한 개정민법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의 방향을 제시한다.

II.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1. 제정 경위

(1)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는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법정책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라고 한다)'에서 연구, 토론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마련되었다. '연구모임'은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법적 절차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구성된 비공식적인 모임으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모임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에 7월에 걸쳐 약 1년간 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가정법원 판사, 법학교수, 사회복지학 교수, 소아과 및 소아정신과 의사, 국회입법조사관, 변호사, 연구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였다.[4] 이 연구모임에서 논의된 안을 기초로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었는데(남인순 의원 대표발의[5]. 이하 '남인순 의원안'이라고 한다), 법안 제14조(보호조치)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를 분리하는 명령(제1호), 친권행사의 정지명령 또는 후견직무의 정지명령(제2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제8호)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제9호)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이 법안 제14조(보호조치)의 내용이 후에 아동학대범죄처벌 법 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흡수된다).[6]

(2) 이 법안에 대하여 2013. 4. 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는데,[7]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이미 그 전에 법안 제14조(보호조치)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였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주된 반대 논거는 "가정법원의 수가 너무 적어서 법안 제14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했던 필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반론을 제기하였다(요지). "2013년 현재 가정법원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시에 설치되어 있고, 가정법원이 없는

3)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에는 친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조치들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보면 친권행사의 정지, 제한 등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예를 들어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아동학대행위자인 부모와 자녀를 격리시키는 명령을 한 경우에 친권자인 부모는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격리명령과 함께 친권행사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이 병과되어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병과될 수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필요한 한도에서 친권행사의 정지, 제한 이외의 다른 종류의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4) 연구모임의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은 30명이 넘는다. 그 중에서 특히 매 회의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정승원 부장판사님과 박종택 부장판사님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5) 2012. 11. 15. 발의.

6) 법안 제14조(보호조치) ① 가정법원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직권 또는 제10조 및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요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를 분리하는 명령 2. 친권행사의 정지명령 또는 후견직무의 정지명령 3. 아동이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퇴거 및 출입금지명령 4.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5.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또는 교육수강명령 6. 아동의 가정위탁보호조치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조치 7. 피해아동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또는 교육수강명령 8.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7) 「아동학대의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 관련법」 제정 관련 공청회 자료집 참조.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18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곳에서는 가정지원과 지방법원 가사부가 그 역할을 담담하고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수가 부족하여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임시보호조치 등을 즉각적으로 취할 수 없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비판임(법령에서 '가정법원'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가정지원과 지방법원 가사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가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4300호, 1990.12.31.〉 제5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이를 관할한다). 현재도 가정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도 담당하고 있음. 또한 가정법원은 전국적으로 매년 8만건이 넘는 협의이혼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정법원의 수가 부족하여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은 설득력이 없음."

그 다음으로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법안 제14조(보호조치)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보호조치 제도는 민 · 형사상 요소가 혼재된 독자적인 제도로서 민사 · 형사를 구별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와 조화되지 아니하고, 운영상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이에 대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반론을 제기하였다. "모든 나라(선진국)의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민사와 형사를 구별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방지와 관련하여서는 민사와 형사의 엄격한 구분의 경계를 허물고 아동학대방지에 가장 효율적인 법체계를 발전시켜 운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대륙법계의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에서도 전문아동기관의 연락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남인순 의원안 제14조에 열거되어 있는 각종 보호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되어있음. 민사와 형사를 구별하는 법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선진국에서 이와 같이 새로운 법체계를 발전시킨 이유는 이러한 체계가 아동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가장 효율적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임.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입법 또는 개정 논의에 있어서 민사, 형사를 구별하는 법체계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임."

한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8]는 법안 제14조(보호조치)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아동학대사건은 피해자가 대부분 어린 아동이고, 학대행위자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인 경우가 많아 법정대리인의 보호조치 신청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피해자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피해아동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3) 위와 같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종전의 반대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였으며, 그 결과 남인순 의원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폐기되었다(대안반영폐기. 2013. 6. 20.). 다만 법안 중 일부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되었고,[9] 그 외에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할 때 법안 제14조(보호조치)의 일부 내용을 고려하도록 요청하는 부대의견이 의결되었다.[10]

(4) 2013년 10월 24일 울주에서 또 한명의 아동이 가정 내에서의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8)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수석전문위원 김대현, 입법조사관 김안나, 2013. 4.).

9)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 교육 등의 권고) 등.

10) 부대의견의 구체적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제20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가정법원에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가. 아동이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퇴거 및 출입금지 명령, 나.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또는 교육수강 명령, 다. 피해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자를 분리하는 명령.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19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이 우리사회에 던진 충격은 적지 않았다. 특히 안타까웠던 점은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2년 반 전(2011. 5. 13.)에 이미 유치원 교사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아동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고조되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본격적으로 심의되기 시작하였다. 2013년 12월 2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는데, 필자는 진술인으로 참여하여 아동학대방지체계를 마련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사항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특례법안' 이라고 한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였다. 특례법안에 대한 의견은 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에 집중되었는데(이는 주로 남인순 의원안 제14조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 중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11]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2]

1) 특례법안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권자로서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인이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특례법안 제20조 제1항), 이러한 규정으로는 아동학대의 현실에 대응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울주아동학대사망 사건의 경우에 8살이었던 피해아동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학대를 방조하고 있었던 아버지(법정대리인)의 청구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아동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청구권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13]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방지체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아동학대현장에 출동하여 조사와 사례판정 및 응급조치를 담당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초기에 아동학대사건에 개입하게 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면, 법원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게 되어 아동학대의 예방과 2차 학대의 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 가정법원이 아동학대를 인지한 경우에는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한다(특례법안 제20조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인의 청구가 없으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없다). 민법에도 가정법원이 미성년자를 위하여 후견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개입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예를 들어 이혼 시 양육사항에 대한 결정(제837조 제3항, 제4항), 친권자 지정(제909조 제4항, 제5항), 후견인 변경(제940조) 등). 또한 가정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하거나 소년재판을 할 때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의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접근금지명령, 교육수강명령, 친권행사의 정지 등)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원이 아동학대사건에 있어서 직권으로 보호명령을 하는 것은 현행법체계와도 모순되지 않으며, 효율적인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특례법안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인지한 경우에도 직권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고, 피해아동 등의 청구권자가

11)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13년 12월 23일 참조.

12) 자세한 내용은 김상용, 가족법연구 Ⅳ, 법문사, 2014, 71면 이하에 소개되어 있음.

13)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후 2016년 통계를 보면 피해아동보호명령 전체 청구건수 368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청구한 건수가 306건으로 전체의 8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54면). 이 통계로부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권자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규정되지 않았다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20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3) 보건복지위원회 부대의견은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가. 아동이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퇴거 및 출입금지명령, 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또는 교육수강명령, 다.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를 분리하는 명령). 특례법안의 피해아동명령에 이미 접근제한이 있으므로 '아동이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퇴거 및 출입금지명령' 이나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를 분리하는 명령' 을 굳이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학대현장에서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를 격리하는 명령과 접근제한명령은 그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아동이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퇴거 및 출입금지명령' 역시 마찬가지다. '아동이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퇴거 및 출입금지명령' 은 아동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학대행위자를 퇴거시키고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접근제한과는 구별된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또는 교육수강명령' 은 얼핏 보면 피해아동보호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 넓게 생각하면 피해아동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대행위자가 상담이나 교육을 통하여 양육방식을 교정하게 되면, 재학대를 예방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명령(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예컨대, 학대행위자에게 정신질환이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경우). 법원에서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의 종류를 될 수 있는 대로 다양하게 규정하는 것은 선진국의 입법례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보호조치의 종류를 다양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적절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 특례법안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종류로서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 양육권의 제한' 이 규정되어 있는데(특례법안 제20조 제1항 제7호), 친권행사의 정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친권행사의 정지란 친권자가 친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행사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는 점에서 친권 자체를 박탈하는 친권상실과 구별되며, 친권상실과 비교하여 볼 때 법원에서도 비교적 부담 없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된다. 친권의 제한이란 친권자가 친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중 일부(예컨대 거소지정권,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의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친권제한을 청구할 때 친권을 어느 범위에서 제한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친권행사를 전부 정지시키는 효력을 갖는 친권행사의 정지가 실무상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의 의의와 한계

특례법 제정을 위한 법사위 간담회에서 제시된 보완 의견 중에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권자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규정되었으며, ⅱ)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아동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다. ⅲ) '아동이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퇴거명령' 과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를 분리하는 명령' 이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반영되었고(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1호), ⅳ) 친권행사의 정지가 규정되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7호). 반면에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또는 교육수강명령' 은 피해아동보호명령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1) 의의

1) 신속한 보호 조치의 실현

아동학대사건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사안에 맞는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21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동의 피해가 확대되거나 재학대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심각하게 학대하여 일단 분리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을 학대행위자인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격리하여 일시보호소나 의료기관 등에서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의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신속하게 부모의 친권행사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친권에 기초하여 아동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의해서 친권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되기 전에는 위와 같은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친권자의 아동 인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그대로 돌려보낸 사례가 있었다(이러한 귀가조치는 결국 2차 학대로 이어졌으며, 그 아동은 사망하였다(자살로 추정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수집사례).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이런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행위자인 친권자와 아동을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한 이후 가정법원에 친권행사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신속하게 부모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14]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면,[15] 그 사람이 거소지정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아동이 일시보호소에서 거주하는 것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 또한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동의를 하면 되므로, 부모가 동의를 거부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기능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로서 아동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친권자가 치료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찾지 못하여 아동의 복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16]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종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9호)이 도입된 이후로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의료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17] 이로써 친권자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신속하게 필요한 의료시술을 실시하여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2)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보호에 있어서 민사적 해결 방안의 도입

남인순 의원안은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보호를 위하여 민사적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모색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18] 그 배경에는 모든 아동학대사례가 형사처벌의 대상

14)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임시조치로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15)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4항 및 제52조 제3항에 의한 제23조의 준용.

16) 서울동부지법 2010. 10. 21. 2010카합2341 결정 등 참조. 이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 이민붕, "자녀에 대한 의료행위에 관한 친권남용 통제", 『법조』 제61권 제5호(2012. 5.), 233면 이하.

17) 이런 경우에 법원이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친권의 일부(예컨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 거소지정권 등)를 제한하고,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친권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한다)을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18) 그러나 남인순 의원안이 형사절차를 배제하는 법체계를 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남인순 의원안 제6조는 학대현장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사법경찰관이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장을 조사한 사법경찰관이 형사상 처벌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기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법체계였다(당시 시행되고 있던 형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등에도 아동학대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충분히 있었다). 2013년 4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당시에도 남인순 의원안에 처벌 절차가 제외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에 흠결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진술인들이 있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당시에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절차나 근거법률이 없어서 처벌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22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적인 구제 수단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사건이 많이 있다는 사실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19] 또한 형사처벌을 요하는 아동학대사건에 있어서도 민사적 보호조치가 병행되어야만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예를 들어 자녀를 학대한 부모에 대해서 형사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구속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격리, 친권행사의 정지 등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과 제52조의 임시보호명령은 남인순 의원안 제14조의 보호조치와 제15조의 임시보호조치를 모태로 한 것인데, 이는 민사적 성격의 보호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명만을 보면 이 법은 형사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피해아동보호명령과 같이 민사적 성격을 가진 제도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효율적인 법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하나의 법률에 형사법적 성격의 제도와 민사적 성격의 제도가 병존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아동학대처벌법이 2014년 9월 29일에 시행되어 약 4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나, 형사법적 성격의 제도와 민사적 성격의 제도가 혼재되어 있는 체계로 인하여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였다는 문제 제기는 듣지 못하였으며, 아동학대처벌법의 성격에 비추어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이질적인 요소라는 주장도 더 이상 제기되지 않는다. 반대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아동학대처벌법에 있어서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20]

(2) 한계 – 예방적 조치의 미흡

아동학대사건에 있어서는 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모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고 있다면 자녀가 어느 날 부모의 폭력으로 인하여 중상을 입은 경우에 비로소 개입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예방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예방적 조치란 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강의를 수강하게 하거나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또는 예컨대,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치료위탁을 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하여 부모가 양육태도와 교육방식을 교정한다면,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두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아동학대행위자(부모)가 양육에 관한 교육이나 상담 등의 지원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수집사례를 보면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부모에게 상담 또는 교육수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21] 그렇지 않으면 교육과 상담 등의 지원서비스를 통한 아동학대의 예방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러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또는 교육수강명령'은 피해아동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끝내 피해아동보호명령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19) 2016년도 전체 아동학대사례 18,700건 중 고소 · 고발, 수사의뢰,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시 등 형사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6,018건(전체의 32.2%)이다(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44면). 따라서 나머지 아동학대사례에 대해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과 같은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0)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21) 같은 취지 현소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24권 제2호(2017. 8.). 407면.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23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여성백인회관 건립과 새로운 도약

1977년 여성백인회관의 건립으로 여성의 의식개혁 및 가정문제 예방 사업의 실현을 위한 배경이 마련되다

1977년 여성백인회관의 건립과 더불어 창립 21주년을 맞아 성년이 된 상담소는 이제까지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돌이켜 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계획을 총 점검했다. 고통 받으며 살아온 여성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일과 더불어 여성들의 불행을 근원에서부터 예방하는 일도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 지켜 나가도록 돕는 법률교육은 인권교육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여성의 법적 지위를 지키고 아울러 향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소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상담활동을 하면 할수록 여성들이 법을 깨우쳐 법률을 생활화해야 함을 절감한 데서 나온 것이었다. 또한 가족법개정운동을 추진해오는 동안 여성들이 가족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여 스스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보면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상담소는 다음과 같은 현안을 도출해냈다. 첫째, 여성을 근본적으로 차별하는 법을 완전히 철폐하는 운동을 다시 적극적으로 펼치는 일 둘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예방조치로써 여성을 민주사회에 맞는 참다운 시민, 참다운 어머니, 참다운 할머니가 되도록 돕는 일과 여성이 자기와 관계되는 법률을 통해 현대사회를 이해해 가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 신설 셋째, 무료결혼식(초기에는 혼인부조사업이라 했음)의 착수로써 통계에 의하면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가정은 70~80%가 불행한 결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중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상담통계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효재 교수의 연구발표와 제언에 따라 법률 바깥에서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맺어주는 역할을 상담소가 해야 할 임무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따라서 무료 결혼식과 혼인신고 대행이 상담소가 새로운 예방사업의 하나로 시작해야 할 시급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넷째, 조사연구 사업으로 도서관 기능을 활성화하여 여성을 계몽하고 의식화시키며 여성문제에 대한 법률적 사회학적 조사연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그 결과를 사회적 문제로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 사업이 필요했다. 다섯째, 출판 및 홍보 사업으로서 이상의 모든 사업을 사회에 더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면 '가정신문' 을 발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와 아울러 상담소는 여성과 법률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 인생에 관한 길잡이가 될 단행본 등을 출판할 필요를 느꼈다.

편집부

*,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24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최신 판례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적 사유에 대한 가정법원 판례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규정에 의하여 친생자의 추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서는 부부의 일방이 민법 제846조, 제847조가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며,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등 참조). 다만 대법원은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동서의 결여가 명백한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에서 부자간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사안에서도 위와 동일한 입장에서 민법 제844조에 의한 친생자 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부의 일방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므1892 판결 참조).

그런데 친생부인의 소는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가 부부의 일방으로 한정되며(민법 제846조), 제척기간도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으로 제한되는 등 (민법 제847조 제1항) 그 요건이 엄격합니다. 때문에 자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명백해 졌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받을 수 없었습니다. 친생부인의 원고가 될 수 없는 제3자(자와 자의 생물학적 부 등)는 친생부인의 소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

• 이번 호에는 인터넷 상담을 대신하여 가사 사건 관련 최신 판례를 살펴보았다.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25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것이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반하여, 2015년 서울가정법원은 "친생추정 및 친생부인 제도에 관한 입법은 부성의 정확한 감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시대적 배경 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과학적인 친자감별기법의 발달로 친자감정을 함으로써 친생추정이 혈연에 반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점, 동서의 결여로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도 이와 달리 보다 더 과학성 및 객관성이 담보되는 유전자검사 등에 의하여 부의 자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까지 그 추정이 미친다고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 사이의 동서의 결여뿐만 아니라 유전자형 배치의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5. 7. 21. 선고 2014드단310144 판결).

또한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① 민법 제844조, 제846조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이러한 신분을 가지는 자녀에 대해서는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부자관계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혈연진실주의 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화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고, 나아가 조속한 부자관계의 확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실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되고자 하는 자의 복리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규정의 존립기반이 사라진 상황에서조차 친생추정을 유지할만한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② 친생자 추정 및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은 1958. 2. 22. 구 민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된 것인바, 이는 부성의 정확한 감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처의 부정행위가 드물었던 시대적 배경하에서 불확실한 개연성에 기반을 둔 것인데, 과학적 친자감정기술의 발달로 혈액형 또는 유전자형의 배치에 대한 감정을 통해 친생자 추정이 혈연에 반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게 된 현재에 이르러서도 위와 같은 친생자 추정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③ 혈액형 혹은 유전자형의 배치 등의 검사는 비교적 간단하여 부부의 내밀한 사적 비밀을 침해하지 않고도 혈연관계 유무의 확인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또한 매우 높고, ④ 부부가 이미 이혼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부와 자 사이의 유대관계도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와 자 사이에 혈연관계도 존재하지도 않는 경우에까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혈연진실주의에 부합하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한 것은, 이를 통해 지켜야 할 별다른 법익은 존재하지 않는 반면, 그로 인해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하는 법적인 부자관계의 정립을 원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고, ⑤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만이 제기할 수 있는바, 특히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의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추정을 벗어나 자신의 친생부와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할 방법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들을 이유로, 동서의 결여 등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유가 없더라도 ① 부부가 이미 이혼하는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② 부와 자 사이의 사회적, 정서적 유대관계도 단절되었으며, ③ 혈액형 혹은 유전자형의 배치 등을 통해 부와 자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생자 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친생부인이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르31287 판결).

이와 같이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달리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 사유를 넓게 인정하는 하급심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선 변호사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26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이혼을 결정하더라도 행위자가 법적 제재를 수용하고 폭력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면서 폭력재발 가능성이 낮아지는 점도 상담의 효과

사건번호 2016버2*** 폭행 / 2016버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집단상담 8회,
교육강좌 1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1회,
(피해자)음주문제상담 1회,
자조모임 5회, 자조캠프 1회
부부상담 2회 등 총 29회

상담기간

2017. 9. 5. ~ 2018. 3. 15.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 지 28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2녀(28세, 25세) 1남(18세)이 있다. 2016년 12월 사건당일 아침, 말다툼 끝에 아내는 주먹으로 남편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고, 저녁에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이 손바닥으로 아내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아내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부부 쌍방이 행위자로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았다.

아내는 남편의 음주문제를, 남편은 아내와 딸에 의한 강제 병원입원(행위자의 음주치료), 처가에 대한 아내의 일방적인 경제적 지원, 거짓말 등을 갈등요인으로 꼽았다. 부부 모두 이혼을 고려하면서도 고등학교 2년생인 아들의 대학입시를 고려하여 일단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결혼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부 각자가 노력할 바를 점검하였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당한 억울한 일(강제입원 등)이 생각나더라도 막말을 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었으며, 아내는 남편에게 신뢰를 주도록 행동하고 존중하면서 살겠다는 것이어서 상담기간 중 이를 실천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부에게 필요한 안전과 평안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부 모두 폭언과 폭력을 다시하지 말 것, 남편은 집에서 음주하지 말 것을 추가과제로 부과하였고, 진정한 의미에서 부부의 결혼생활은 유의미한가, 이대로 좋은가 등을 점검할 것도 상담의 목표로 정하였다. 초기 부부상담 이후 부부는 분리하여 상담에 참여하였다. 남편은 생업 때문에 주간에 진행하는 음주문제 상담에는 참여할 수 없었지만 약속대로 집에서는 절대로 음주를 하지 않았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구속은 심했지만, 이전과 다르게 아내가 강력한 입장을 취하자 그 정도가 약해졌다. 아내는 자조모임에 참석하면서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마음이 풀리는 경험을 하였으나, 남편이 여전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27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히 아내와 딸을 원망하고 딸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자 이혼의사를 굳혔다. 남편은 상담이 법적 제재로서 감수하여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수용하였고 어떠한 경우에도 폭언과 폭력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다. 남편도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에서 이견을 보였는데 바로 이혼절차를 진행할 의사는 없었기에 부부에게 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결혼을 유지할 때 지켜야 할 책임 등을 강조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사건번호 2017버6**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동생) 개별상담 6회, 집단상담 9회,
교육강좌 8회,
피해자(누나) 전화상담 1회
등 총 24회 실시

상담기간

2017. 9. 5. ~ 2018. 3. 9.

상담경과

행위자는 2017년 1월 사건 당일,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외출 준비를 하던 중 늦장을 부린다고 비난하는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에 걸쳐 폭행을 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았다.

행위자는 미혼이며 2017년 2월 한의대를 졸업하였다. 행위자는 사건 당시 자신은 국가고시 준비로, 피해자는 어머니 간병과 가사 부담으로 스트레스 상황이었다는 점을 갈등 촉발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행위자는 막내이고 누나가 3명인데 피해자는 둘째누나이다. 피해자는 20년 전 미국으로 갔는데 어머니가 큰 수술을 하게 된 데다 본인의 여러 사정도 겹쳐 한국에 왕래하던 터였다. 행위자는 자랄 때 다른 누나들과는 잘 지냈는데 유독 피해자와는 자주 다투었고 피해자에게 자주 맞았다고 하는데, 맞아서 멍이 들거나 흔적이 남지는 않았지만 감정을 많이 상하였다고 한다.

본건과 관련하여 행위자는 폭력사실을 반성하고 법적 제재로서의 상담위탁 보호처분에 성실하게 상담에 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실제로 성실하게 상담에 참여하였다. 행위자와 피해자는 사건 이후로도 부모와 함께 한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사과하였고 폭력도 재발되지 않았지만,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진심으로 변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앞으로 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켜보겠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사회생활에서 항상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기에 법적 제재를 받게 된 사실에 놀랐지만 폭력이나 대화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비폭력적인 대화법을 이해하게 된 점을 유의미하게 받아들였다. 또한 폭력에 기인한 결과를 충분히 체감하고 인식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향후 갈등 재발 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건번호 2017버980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2회,
부부상담 8회, 부부 집단상담 5회, 부부 교육강좌 3회 등
총 20회 실시

상담기간

2017. 9. 14. ~ 2018. 3. 13.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결혼한 지 9개월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다. 부부 모두 중국에서 왔고 재혼이다. 행위자는 2017년 5월 사건당일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행위자가 자신의 전혼자녀 문제로 시비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하고 이를 피해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로 방문을 수회 찍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28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고 식탁 의자를 방문을 향해 던지는 등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와 함께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았다.

부부의 갈등요인은 행위자의 전혼자녀문제였다. 행위자가 전혼관계에서 낳은 딸(중국 거주, 약간의 장애를 갖고 있고 사건 발생 무렵 이혼하였음)과 자주 연락하고 돈을 주는 등 돌보는 일에 피해자가 불만을 갖는 것이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피해자도 전혼관계에서 낳은 딸(한국 거주)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행위자도 그렇게 하도록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피해자는 행위자를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행위자가 숨기는 것 같아서 불신하는 마음이 생겼으며 행위자에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것이 문제라고 여기는 반면 행위자는 문제가 아니라며 피해자의 불만을 회피하고 있었다.

종결상담 시 행위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고, 문제가 아니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행위자는 대화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듣기 좋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피해자 역시 상담 내용에 공감되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부부 모두 상담 이전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7점으로 평가하였으나, 종결 시 부부관계를 피해자는 8점, 행위자는 9점으로 평가하는 등 관계가 개선되었다.

사건번호 2017버1*** 상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 (남편) 개별상담 10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1회,
피해자 (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1회 등 총 14회 실시

상담기간

2017. 9. 19. ~ 2018. 3. 19.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3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2남(4세, 2세)이 있다. 행위자는 이혼 경험이 있으며 전혼 자녀는 없고, 피해자는 초혼이다. 행위자는 사무직에 종사하였으나 2년 전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초 · 중 · 고 학생 과외 교사이다. 피해자는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적하고 특히 야간에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행위자는 2017년 6월 사건 당일, 자녀 식사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식탁을 엎어 그릇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며 넘어뜨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았다.

행위자는 어릴 때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하여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면서 아이는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도 같은 생각이어서 부부의 형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행위자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성실함과 착함에 이끌려 결혼을 하였는데, 성실에는 의문이 없지만 착함에는 의문이 생겼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부간 이견이 생기면 행위자가 오랫동안 대화를 하지 않는 점을 갈등 요인으로 꼽았다. 결혼 초기에는 피해자가 대화를 시도하여 갈등을 해결해갔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대화 재개를 위한 의지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위자는 피해자의 공격적인 대화방법을 갈등 요인으로 꼽았는데, 상담을 통하여 비폭력대화법을 이해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또한 성격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피해자의 생활 습관을 인정하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피해자와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사건 이전에 0점이던 부부관계는 상담종결 시 부부 모두 10점 만점에 8점 정도로 회복되었다. 부부간 역할 분담과 관련하여 행위자는 5년 후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갈 때쯤 다시 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동안에는 계속 육아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29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노포의 장사법

글 박찬일 / 사진 노중훈
인플루엔셜, 2018

결혼 초에 을지로 골목에 있는 '조선옥'에서 저녁을 먹은 적이 있다. 본적지가 중구 산림동인 남편이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곳이라 했다. 오래된 한옥이었고 갈비를 구워서 갖다 주는 곳이었다. 넓은 방 저편에 노부모를 모신 대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노부부는 오랜 단골처럼 보였다. 이 책 「노포의 장사법」에는 이 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국내 최장수 근무, 60년차 주방장의 힘"그랬다. 나도 아마 이 주방장이 구워준 갈비를 먹었던 것이다. 어쩌면 남편도 아버지와 그 갈비를 먹었을 수도 있겠다.

필자를 보고 책을 고르는 경우가 있다. 「노포의 장사법」이 그랬다. 종종 신문 칼럼에서 '국수주의자'로 본인을 소개하면서 맛깔난 글을 쓰는 요리연구가 박찬일의 글을 읽고 그가 저자인 책을 찾아서 두 권을 읽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노포의 장사법」이다. 박찬일은 잡지 기자로 일하다 소소하게 스파게티나 팔면서 늙었으면 좋겠다는 아내의 말에 이탈리아로 파스타를 공부하러 갔고 돌아와서 식당을 열었으며 이렇게 글도 쓰고 있다.

흔히 일본에는 백 여 년이 넘는 우동 집이니 스시 가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전통이 없다고 비교하는 말들을 적지 않게 보고 듣는다. 어쩌면 일제 강점기니 한국전쟁이니 하는 우리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런 노포가 있을 리 없다고 쉽게 단정해 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런 '조선옥' 같은 노포들이 꽤 있고 오늘도 그 주방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든 노포에 다 가보고 싶고, 우래옥과 하동관에 고기를 넣고 있다는 것만으로 많은 것을 설명하는 70년 전통의 '팔판정육점'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다.

졸업하고 취직한 첫 직장에서 동료들과 가끔 가던 '을지오비베어'의 이야기는 큰 울림을 주었다. 서울의 원조 호프집인 이 가게의 창업자는 건강 때문에 구순의 나이에 딸과 사위에게 자리를 물려준 강효근 옹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침 10시에 열고 밤 10시에 닫는 걸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그게 우리 가게였어." 그는 1980년에 이 가게를 열고 매일 아침 가게 앞 골목을 쓸었다고 했다. 이 가게를 소개하는 글의 제목은 '장사꾼은 골목의 신뢰를 얻어야 성공한다'이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말에 담긴 무게가 엄숙함으로 다가왔다. 무엇이든 삶을 대하는 태도는 이래야 할 것이다. 작은 가게든, 매일 하는 출근이든, 세 끼 밥상을 차리는 생활이든.

표지에 나온 설명에 따르면 이 책은 대한민국 상위 3만 개 기업의 평균 수명이 고작 17년이며, 핫플레이스 식당들이 1년도 못 버티고 문 닫는 시대에 평균 업력 54년에 육박하는 노포의 위대함을 재발견하게 해주는 책이다.

여기에 나온 노포들은 기교나 뛰어난 손맛 보다 올바른 음식철학과 사업적 통찰력 그리고 우직함으로 묵묵하게 시간을 지나왔다. 그리하여 고객은 물론 일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노동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이 숙 현 편집부장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30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영화이야기

미쓰백

감독 이지원

출연 한지민, 김시아, 권소현, 이희준

세차장부터 피부미용실까지 하루에도 아르바이트를 몇 건씩 뛰면서 악착같이 돈을 버는 여자 백상아(한지민)의 눈앞에 자꾸 어린 아이 지은(김시아)이 등장한다.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은은 추운 날씨에도 언제나 깡총하게 짧은 여름원피스 차림에 맨발로 슬리퍼를 끌고 있다. 19살 나이에 전과자가 되었고, 출소 이후 예전 담당형사였던 장섭(이희준) 외에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고 외롭게 살아가던 상아는,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한 지은을 차마 외면하지 못한다. 지은에게 보호자가 없는 건 아니다. 생물학적 부친 김일곤(백수장)과 일곤의 애인 주미경(권소현)이 '가족'으로 함께 살고 있지만, 그들은 어린 지은을 잔인하게 학대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상아는 지은을 구하기 위해 세상과 맞서기로 결심한다.

올 초 방영됐던 JTBC 드라마 〈마더〉와 더불어, 영화 〈미쓰백〉은 아동학대의 현실과 그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절실한 의무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계획에 없이 어린 나이에 덜컥 임신했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일단 아이를 낳았고, 아이도 생명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혹은 일부러 외면하고) 단지 내 손에 가깝게 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적/신체적 학대를 서슴지 않는 이들. 누군가는 아이를 낳기만 하면 모성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들 한다. 누군가는 아이는 어떻게든 알아서 쑥쑥 큰다고도 한다. 아이의 생명은 소중한 은혜이자 축복이기 때문에 일단 생기고 나면 반드시 낳아서 귀하게 키워야 한다고도 한다. 그러나 〈마더〉나 〈미쓰백〉 같은 작품이 던지는 메시지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 피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임신까지 이른 상황, 그리고 낙태가 죄가 되는 국가에서 결국 아이를 낳긴 낳았으되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고 다만 그 분노와 당혹감을 아이에게 전가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이들이 있다. 철없는 엄마에게 혹은 아빠에게 '생겨난' 아이는 어떤 축복도 사랑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거나 그렇게 죽는다.

〈미쓰백〉은 이 사회에서 최약자층이라 할 수 있는 아이들을 향한 학대에 대해 좋게 좋게 풀어가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 등의 감동적인 문구처럼 아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을 강조하지도 않는다. 극중에서 어떤 여자는 자신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할 부적절한 양육자라는 사실을 직시하며 아이를 자신으로부터 강제로 떼어놓고, 어떤 여자는 자신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잘 알면서도 그 상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있기를 선택한다. 어떤 여자는 아이를 어떤 수단이거나 장애물로 여기며 스스로가 삶에서 받는 압박감과 분노를 더 약자인 아이에게 고스란히 대물림한다. 영화는 그렇게 1시간 35분 정도의 짧은 러닝타임 동안 수많은 국면들을 효과적으로 압축시키며, 아이를 낳는다는 것, 아이를 키운다는 것, 그 아이가 제대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것이 단지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맡겨질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지, 또한 '연대'라는 단어에 얽힌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을 뛰어넘게 되는 인간애의 발로에 대해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처럼 쉽지 않은 선택의 연속으로 진행되는 〈미쓰백〉은 신인 감독의 데뷔작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만큼 단단하게 짜인 완성도로 믿음직하게 뒷받침된다.

"이런 나라도, 같이 갈래?" 영화 말미, 상아가 잔뜩 잠긴 목소리로 지은에게 이 말을 건네는 순간,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기 어렵다. 어떤 아이는 평생 아이인 채로 미성숙하게 늙어가고, 어떤 아이는 너무 이르게 어른이 되어버린다. 〈미쓰백〉은 후자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손을 내밀면서 서로를 구원하는 이야기다.

김용언 영화 칼럼니스트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31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수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본 상담소에서 지난 10월 1일부터 8주간 실무수습을 한 사법연수원생의 소감을 싣는다.

조 현 옥
48기 사법연수생

연수원 생활동안 너무 나만을 위해 시간을 사용한 것 같아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는 심정으로 상담소에 처음 문을 두드렸다. 물론 과거 학부 시절에 법률구조 수업을 위해 상담 참관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때 뵈었던 선생님들과 이곳의 공기가 그리워서 이곳을 방문한 이유도 있다.

이곳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 면접상담의 경우는 정말로 법률적 절차를 알아보려고 오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이 많이 절제되어 있지만, 사이버 상담이나 전화상담의 경우는 흥분한 상태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 바로 어제 혹은 오늘 겪은 일인데, 정작 가까운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럽지만 그래도 억울한 일들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눈물이 막 흐를 때 자신을 모른다고 믿는 우리 상담소에 전화를 거는 것이다. 정말로 부끄럽고 황당한 일을 겪으면 지인께 털어놓기 어려운 법이다. 상담원이 나이가 어리건 여자건 상관없이 무언가 말을 하고 싶어 한다. 사실 이혼을 할지 말지 여부나, 집나간 아내 때문에 괴로운 심정에 대한 위로나, 화가 난 아내를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 남편이 딸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려 할 때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지… 그런 질문들에 대하여 나는 해줄 수 있는 법률적 조언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심리상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참 곤란한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그런 전화를 여러 번 받으며 들었던 생각은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답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그 시간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어 그분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었다면 정말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가족법과 관련된 수많은 사연들을 접하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가족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된다. 가정 내에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을 누군가는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가정 내의 갈등은 감정의 골이 깊은 경우가 많다. 양당사자가 옳고 그름을 수백 번 따지다가 마침내 법의 영역으로 들어와 해결을 구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뇌가 있었을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족법은 늘 함께 가야 하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나를 믿고 찾아와줄 나의 의뢰인들에게 좀 더 성숙한 위로와 절제된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변호사로 준비되고 싶다.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32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상.담.소 . 소.식

2018년도 정기 후기 이사회
2019년도 사업계획 등 검토

상담소의 2018년도 정기 후기 이사회가 지난 11월 15일 열렸다. 김춘봉, 윤후정, 박양덕, 김의재, 조대연, 김영옥, 김명순, 곽배희, 임재연 이사 및 최문원, 한미영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차명희 이사장의 주재로 열린 이 날 회의는 개회, 전회 회의록 낭독,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건토의에서는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다. (관련사진 2면)

2018년도 특강
– 직원 및 자원봉사자 재교육 겸해
'알아 두어야 할 조선 정치사'를 주제로, 직원들의 인문학적 소양 키우고 문화적 충전

11월 28일 본소 강당에서 직원 및 자원봉사자 재교육을 겸한 2018년도 특강이 있었다. 이덕일 소장(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을 초정하여 '알아 두어야 할 조선 정치사'를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윤휴와 송시열로 대표되는 조선 후기의 사상적, 정치사적 흐름의 변화와 역사적 서술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본소에서는 직원들의 전문적 역량을 확대하고, 상담자로서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한 편 문화적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학은 물론 다양한 방면으로 직원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사인 이덕일 소장은 숭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동북항일연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단법인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를 설립하고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30여 권의 역사비평서를 집필하였다.

가정폭력전문가 간담회 개최

본소는 지난 11월 2일 가정폭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본소의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을 평가 및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는 2018년 본소에서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 전문가인 우애령 박사(사회복지학 박사, 작가), 김혜선 교수(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희진 교수(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장희숙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윤경 교수(한국단기가족치료연구소)가 참석하였고, 가정폭력의 유형 중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언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33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에 대비한 대응방안 및 프로그램화의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간담회에는 본소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숙현 출판부장, 차연실 상담위원이 참석하였다.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 교육부에서는 11월 22일 정신과전문의 김병후 원장(본소 이사)의 강의로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의에는 총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참가자들은 '분노조절장애' 에 관한 강의를 듣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누구나 느끼는 감정인 분노를 실제 사례와 함께 분노의 이유, 남녀의 분노 유형차이, 해결책 등으로 설명해주어 참가자들은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 강의는 오는 12월 27일(목) "외도에 대한 대처"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화상담 자원봉사자 재교육 및 모임

본소 전화상담 자원봉사자들(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이병주, 홍진범)은 11월 28일 열린 본소 특강 이덕일 소장(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의 '알아두어야 할 조선정치사' 강의를 함께 듣고 이후 점심식사를 겸한 모임을 가졌다.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 현장실습 연수 (9/7-11/16)
  권윤정(이대 스크랜튼대학 국제학과)

출장상담 및 법교육

11.1.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혼전교육
- 김진영 상담위원

11.8. 대검여성아동범죄 전담 검사 · 수사관 워크숍
- 박소현 상담위원

11.26. 상명대학생 대상 가족법교육
- 조경애 상담위원

11.26. 강서지역자활센터-신용회복 및 가족법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11.30.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교육-염광여자메디텍고
- 박소연 상담위원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박소연, 정다혜,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 백국현 법무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1월 3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젠더법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비혼모에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34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대한 법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 주제'에 관한 토론 발표를 하였다. 9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주최 사례 공유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였고, 16일 한국가족법학회와 서울가정법원이 공동주최한 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20일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주최 전문가자문위원회에 참석하였고, 당일 중앙장애아동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명노연 과장과 노문영 변호사, 정도엽 대리등과 함께 발달장애아동 및 성년후견 등에 대한 소송구조 지원 업무협의간담회를 가졌다. 26일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법 및 가족법개정운동을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1월 8일 대검찰청 형사2과에서 주관한 2018년 여성 · 아동대상 범죄 대응 전담검사 및 수사관 워크숍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16일에는 한국가족법학회/서울가정법원 공동학술발표회에 참석하였고, 23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하였다.

곽배희 소장,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연수 참석 등

본소 곽배희 소장은 11월 1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조정위원 연수에 참석했다. 2일에는 본소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의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했으며, 7일에는 한국여성상담센터 설립 20주년을 축하하는 축하 영상을 촬영하였다. 9일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열린 모범사례공모 업무 협의회에서 축사를 했다. (사진)

고맙습니다

2018년 11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유문숙, 이병주, 홍진범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종협, 김경훈, 김지후, 문동주, 박수열, 박은정, 손태홍, 송명호, 안서연, 윤웹섭, 이효재, 전현정, 조진형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미옥, 김소이, 김연두, 김윤미, 김재희, 김진아, 이승주, 전성배,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리처드 윌슨, 사대진 변호사 님

• 학생 자원봉사

강명주, 강민재, 김소미, 김초원, 김현지, 남서연, 박소언, 박정현, 서혜수, 성창훈, 성혜원, 오민지, 유준혁, 윤지원, 이다경, 이수연, 전혜진, 정희원, 차시온, 최슬지, 최이슬, 한 솔, 함솔희, 홍현정 님

후 원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헌, 이현혜, 천정환, 이승훈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재무회계과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35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지·부·소·식

강릉지부

11월 7일, 21일, 22일, 26일, 28일 강릉제일고등학교 교직원, 삼척임원초등학교 교직원, 경포중학교 학생(8개 반), 양양우체국 직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학생 대상으로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14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군산지부

11월 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모양육안내교육을 실시하였다. 군산지원 가사조정을 5회, 군산지청 형사조정을 2회 실시하였다.

대구지부

윤용원, 김인현, 안혜림, 김재철, 박기대, 이석화, 곽경화, 황미옥, 정홍욱, 상무균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협력사업으로 성남지원 협의이혼 의무상담을 4회,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 7회, 광주시법원 2회를 실시하였다. 29일 제 60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박지훈, 송지민, 이수연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수원지부

수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상고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다. 공영서, 송지영, 황미옥, 이윤선, 최지희, 배정완, 최강호, 전태우, 허정택, 김정혜, 이정호, 한승일, 강은혜, 위철환, 박진호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송도지부

11월 3일 인천시 연수구 사회복지박람회에서 상담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 최민석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순천지부

11월 6일, 13일, 20일, 27일(매주화요일)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고, 별량초등학교 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전주지부

전주지방법원 협의이혼 상담을 3회, 가사조정을 1회 실시하였다. 11월 8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20일 LH 전주주거복지 통합지원센터에서 가정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보향, 이연주, 정아람, 이한명, 임영곤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한지영 변호사가 소송구조봉사를 하였다.

중구지부

9월 5일~11월 28일(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수탁 받은 가정폭력가해자 19명을 대상으로 좋은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장상현, 정수경, 김창건, 박진석, 이동건, 홍지혜, 박은정, 정형준, 여지은, 박수열, 박정두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11월 21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윤 변호사가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청주지부

11월 22일 장애인이해 및 인권교육에 소장 및 전직원이 참석하였다.

복미영 상담위원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36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2018년 10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8년 10월 한 달 간 접수 · 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4,043건으로 본부가 6,804건, 지부가 7,239건이었다. 본부는 6,148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505건 · 소장 등 서류작성 113건 · 소송구조 38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5,598건 · 화해조정 1,584건 · 소장 등 서류작성 44건 · 소송구조 13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148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8년 9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남녀관계(0.6%→0.8%), 이혼(17.5%→20.0%), 면접교섭권(2.5%→2.9%), 인지(1.3%→1.4%), 친생부인(1.0%→1.6%), 친생자존부(2.6%→3.0%), 입양(2.1%→2.3%), 파혼(0.5%→0.7%), 혼인무효 · 취소(0.9%→1.1%), 유언 · 상속(7.5%→7.8%), 친양자(0.6%→0.8%), 성년후견(2.1%→2.5%), 가사절차(7.0%→8.1%)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파산(3.7%→3.9%),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절차(0.1%→0.5%)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148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180건(19.2%), 전화상담 4,784건(77.8%), 통신 및 인터넷상담 184건(3.0%)이었다.

2018년 11월 본부 상담 통계

총상담 6,814		
법률상담 (6,034)		
면접	전화	통신
1,084	4,773	177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627	112	41

* 2018/11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88,157건

지 부	총상담	법률상담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합계			
서울(본부)	6,804	1,180	4,784	184			6,148	505	113	38
강 릉 (033) 652-9555	105	75	26				101	4		
구리 · 남양주 (031) 551-9976	505	26	21				47	458		
군 산 (063) 442-1560	152	23	58				81	69		2
대 구 (053) 745-4501	960	273	69	5		출장 460	807	153		
대 전 (042) 520-5258	223	44	177	1			222		1	
동 해 (033) 535-0188	151	52	99				151			
목 포 (061) 273-2514	129		129				129			
부 천 (032) 667-2314	396	79	194				273	123		
성 남 (031) 707-6661	480	296	76	1		출장 22	395	81	4	
송 도 (032)-834-1369	185	39	25				64	117	4	
수 원 (031) 243-4600	427	159	101	1		출장 69	330	91	3	3
순 천 (061) 753-9910	183	72	104				176	7		
안 동 (054) 856-4200	124	16	73	1			90	34		
울 산 (052) 246-9568	148	55	85				140	1	7	
익 산 (063) 851-5113	262	59	203				262			
인 천 (032) 865-1120	380	65	28				93	279	8	
전 주 (063) 244-2930	284	131	85	59	9		284			
정 읍 (063) 535-3705	164	61	102				163	1		
제 천 (043) 644-5690	123	43	80				123			
중 구 (02) 2238-6554	445	310	135				445			
진 주 (055) 746-7975	151	67	50				117	27		7
창원마산 (055) 261-0280	299	105	118	3			226	70	2	1
청 주 (043) 257-0088	198	81	49	1			131	57	10	
춘 천 (033) 257-4688	353	73	62	1		출장 217	353			
태 백 (033) 554-4004	111	56	30			출장 25	111			
평택안성 (031) 611-4251	232	50	151			출장 14	215	12	5	
포 항 (054) 283-7555	69	6	63				69			
지부총상담	7,239	2,316	2,393	73	9	출장 807	5,598	1,584	44	13
총 상담	14,043	3,496	7,177	257	9	출장 807	11,746	2,089	157	51

** 2018/10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103,100건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37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2018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사례공유 업무협의회 최우수상 사례

지난 11월 9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사례 공유 업무협의회가 개최되었다. 협의회는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진행되었으며, 본 상담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함께 법률구조 사례를 발표하였다. 그 중 상담소 백인변호사단에 소속되어 있는 김소이 변호사의 진행 사건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당시 공모하여 수상한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3년 혼인했고, 2004년 사건본인을 낳았다. 위 당사자들은 2009년에 이혼하였는데, 신청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이 만 20세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2. 화해 이후 상황

위 화해조서가 작성된 후 피신청인은 얼마 동안 위 조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2013년 중반부터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피신청인은 자영업자로, 자신의 업장에 대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기에 신청인은 이를 통해 피신청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님은 알 수 있었다.

3. 지원내용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신청인은 자영업자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이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사를 통해 돈을 받게 된다. 이에 신청인의 변호사는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는 2017년 12월 인용되었다. 그러나 위 결정으로 카드사에서 채권이 압류되고 있다는 상황을 알게 된 피신청인은 다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서비스 제공 대가를 수령하였고, 이로 인해 위 카드사 중 한 회사에서 압류된 소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카드사들에서 압류된 금액이 전혀 없었다.

나. 동산압류

이에 변호사는 신청인과 상담 후 업장의 동산압류를 시도해 보기로 하였다. 2차에 걸친 시도 끝에 동산집행에 성공하였고, 현재 피신청인 사무실 내의 가전 등이 압류되어있는 상황이다. 직접 동산압류를 겪은 피신청인은 동산압류 당시 양육비 채무액을 4회에 걸쳐 분할로 지급할 것을 약속

가정상담 내지12월.ps 2018.12.7 3:50 PM 페이지38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했으며, 2018년 9월 약속한 첫 번째 분할 지급금을 송금하였다. 우선 피신청인이 약속한 금액을 송금하였기에 신청인의 변호사는 피신청인의 압류된 동산을 경매로 넘기기보다는 우선은 집행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신청인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4. 사례의의

처음 행했던 채권압류 및 추심은 채권의 만족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동산압류까지 진행하자, 피신청인은 더욱 적극적으로 위 사안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동산집행이 시작된 후, 피신청인은 양육비 채무에 대해 분할지급을 하며 지속적으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위 카드사에 대한 압류를 하나만이라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결국, 위 사례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다각적인 방법으로 피신청인을 압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양육을 회피한 친부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8년간 실질적으로 양육한 위탁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법률구조 2017-229

담당 : 최국신 변호사

사건명 :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내용 : 본 사건의 특별대리인(남, 63세)은 배우자와 1977년 혼인하여 슬하에 1남2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던 중, 2009년 수양부모협회를 통해 청구인 겸 사건본인(남, 18세)을 위탁받아 현재까지 배우자와 함께 양육하고 있다. 사건본인의 친부모는 2000년 이혼하였고, 이혼 후 친모는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뤄 사건본인의 양육을 회피하고 있으며, 친부 또한 경제적 빈곤 및 재혼으로 사건본인의 양육을 피하고 있다. 이에 사건본인은 조부모에게 맡겨졌으나 조부모의 아동학대로 결국 위탁가정에 의뢰되었다. 사건본인을 위탁받은 특별대리인 부부는 각 각 택배일과 개척교회 목사 일을 하면서, 사건본인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사건본인에게 많은 사랑을 쏟았다. 이에 사건본인 또한 위탁부모를 친부모처럼 따르고 의지하고 있다. 사건본인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통장을 개설하거나 핸드폰을 개통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친권자인 친부의 협조가 필요한데, 친부와는 연락이 잘 닿지 않아 필요할 때마다 친부의 협조를 받는 것이 쉽지 않으며, 사건본인 또한 친부를 만나는 것을 불편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특별대리인은 사건본인을 향후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하고자 상담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지방법원 2018. 10. 4.)

1.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의 특별대리인 이OO을 선임한다.

3.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성년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시작으로 매년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 매년 이 심판 확정일과 같은 월, 일)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미성년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미성년후견인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이수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미성년후견인은 이 삼판 확정일 이후 주소의 변동이 있거나 연락처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 지면관계 상 소송구조 결과를 다 싣지 못하거나, 게재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교/육/강/좌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12월 10일)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공개강좌

▶ 일시 : 2018년 1월 ~ 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시	강 의 제 목
12월 27일	9. 외도에 대한 대처

등지교실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하기 위해 점검하고(See), 해결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강사
12월 13일	자존감 : '나는 나다'	정윤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생활법률강좌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 · 가정폭력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 및 학부모 · 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 · 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 가정폭력특별법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 · 중 · 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연수과정명 :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 아동폭력, 학교폭력)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과정
▶ 연수기간 : 2019년 1월 8일(화) ~ 10일(목)
▶ 연수기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연수대상 : 서울 · 전국 초 · 중 · 고 교원 40명(선착순 모집)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교과과정

가족법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약혼 · 혼인 · 사실혼에 관한 법률 / 이혼 · 친권에 관한 법률 / 친자 · 양자 · 친양자에 관한 법률 / 부양에 관한 법률 /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 / 상속 · 유언 · 유류분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등록부 / 출생신고 / 혼인신고 / 등록부 정정 등

가정폭력특별법 및 상담사례연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상담사례연구

임대차 및 채권 · 채무에 관한 법률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가정상담 표지12월 2018.12.7 3:48 PM 페이지1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공개강좌

둥지교실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하기 위해 점검하고(See), 해결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생활법률강좌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 가정폭력특별법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 · 중 · 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02-780-5688~9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